

제30회 임시회 목포시의회본회의회의록(제 1 차)

1. 일 자 : 1954(4287)년 5월 30일

2. 장 소 : 의회 의사당

3. 개의성립 :

1) 참석의원 : 18명

이복주, 명남철, 김삼성, 김남진, 진복춘, 김팔용, 이재홍, 김경현,
문택호, 이문길, 정응표, 김길환, 이소규, 김경희, 박찬규, 김자홍,
오세 일, 김영완

2) 불참의원 : 2명

유정두, 김자홍

4. 의사안건 :

1) 보고사항

※ 제29회 의회 회의록

※ 유정두 의장 사표수리의 건

2) 부의안건

※ 상임 각 분과위원장 개선의 건

※ 교육위원회 위원 선거의 건

5. 개회선언 : 부의장

(오전 10시 30분)

6. 토의상황 :

◇ 박찬대 서기

- 제29회 의회 회의록을 낭독

◇ 부의장

- 회의록에 이의없으면 통과하겠음

※ 유정두 의장 사표수리의 건

◇ 부의장

- 보고가 있었음

(요지 : 유 의장께서는 민의원 선거 입후보로 인하여 선거전에 있어 유리한 투쟁과 양다리를 걸지 않겠다는 정치도의상 의원 사표를 제출 하였으며, 의장 부재시는 부의장이 수리할 수 있다는 법적 견지에서 수리 했다는 요지)

※ 의회 각 분과위원장 개선의 건

◇ 진복춘 의원

- 징계자격위원의 결원 보충에 있어서는 시간이 많이 경과되었으니 의장이 지명해서 선출하자 동의
(재청)

◇ 이복주 의원

- 중대한 일을 독단적으로 의장에게 일임하면 안되니 징계위원 4명에게 일임해서 선출케 하자 개의
(재청)

◇ 정응표 의원

- 의장에게 일임하다. 위원 4명에게 일임해도 불공평하고 모순된 일이니 징계위원 보선에 있어서는 전 의원의 의견을 받드는 것이 가장 민주주의적 이니 단기 무기명 투표로서 선출하자 재개의
(재청)

◇ 부의장

- 재개의부터는 표결하겠음
재석의원 17명중
재 개의 가 7, 부결,

개의 가 4, 부결

동의 가 3, 부결

◇ 김남진 의원

- 3제안을 살리는 의미에서 의장과 각 분과위원장과 징계위원 4명이 합석한 가운데서 보선을 하자는 의견

◇ 진복춘 의원

- 전 의원 무기명 투표로서 보선할 것은 긴급 동의
(재청, 4청)

◇ 정응표 의원

- 각 분과위원장 및 교육위원 선거에 있어서 감표위원은 2명을 선출하되 선출방법은 의장에게 일임할 것을 동의

(재청)

가결

◇ 부의장

- 긴급 동의에 대하여 표결하겠음
재석의원 17명중 가 15, 가결

◇ 부의장

- 지금부터 징계위원 보선 투표를 시작하겠음

※ 투표개시 : 오전 11시 10분

※ 개표상황

김길환 의원 9표, 당선

오세일 의원 : 8표

◇ 부의장

- 지금부터 각 분과위원장 개선에 들어가겠음

※ 내무위원장 선거의 건

※ 개표상황

김영완 의원 : 4표 당선

박찬규 의원 : 1표

오세일 의원 : 1표

※ 문교사회 위원장 선거의 건

※ 개표상황

정응표 의원 : 6표 당선

김삼성 의원 : 1표

※ 산업 위원장 선거의 건

※ 개표상황

문택호 의원 : 1표

이재홍 의원 : 2표 당선

진복춘 의원 : 1표

※ 징계자격 위원장 선거의 건

※ 개표상황

김팔용 의원 : 3표 당선

이문길 의원 : 1표

◇ 부의장

- 교육위원 선거에 들어가겠음

◇ 진복춘 의원

- 10분간 휴회할 것을 동의

(재청)

◇ 부의장

- 개의안부터 표결하겠음
재석의원 17명중
개의 가 6, 부결
개의 가 7, 부결

◇ 부의장

- 양안 부결로 인하여 의사를 진행하겠음

◇ 명남철 의원

- 투표 순위를 유달, 중앙, 서부교 순위로 할 것을 동의
(재청)

◇ 부의장

- 표결하겠음
재석의원 17명중 가 17 가결

◇ 부의장

- 유달학구부터 투표를 시작하겠음

※ 교육위원 선거의 건

학구별	입후보자	입후보자			비고
		1차	2차	3차	
유 달 교	박두순	8	8	6	
	안홍성	3			
	이우양	6	8	11	
	이돈채		1		
	계	17	17	17	

학구별	입후보자	투표상황(1회)			투표상황(2회)			비 고
		1차	2차	3차	1차	2차	3차	
중 양 교	이승원	2	2	1	10	4	10	당 선
	강계수	1	1		2	4	2	
	이돈채	6	6	4	1	5	5	
	이복동	5	8	11				당 선
	박남선	1			4	2		
	이광수	1						
	박복동			1				
	조보윤					1		
	기 권					1		
계	17	17	17	17	17	17		

학구별	입후보자	득표상황(1회)			득표상황(2회)			비 고
		1차	2차	3차	1차	2차	3차	
서 부 교	김익봉	6	4	4	14			당 선
	김경인	8	10	12				당 선
	이돈채	3	3	1	3			
	계	17	17	17	17			

◇ 부의장

- 의장 문제에 대해서나 시전 감사에 대해서 토의해 주기 바람

◇ 김경현 의원

- 차기 의회에서 부의안건으로 넣어서 하자 동의
(재청)
전원 가결

◇ 이복주 의원

- 벌써 해야할 사무 감사를 연도 폐쇄기가 되어도 실시치 않아 집행부도 지장이 있으니 내 6월 10일부터 15일간 회기를 두고 사무 감사를 실시할 것을 동의
(재청)

◇ 부의장

- 표결하겠음

재석의원 17명중 가 17 가결

◇ 이현두 재무과장

- 국세법 조례규정에 대한 내용을 설명
(내용생략)

◇ 부의장

- 회의록 서명에 명남철, 진복춘 의원을 지명

7. 산회선언 : 부의장

(오전 12시 55분)

위 회의록을 확인하고 자이 서명 날인함

1954(4287)년 5월 31일

부의장 : 이소규

의원 : 명남철

” : 진복춘

작성자 서기 : 천세봉

제30회 임시회 목포시의회 본회의회의록(제 2 차)

1. 일 자 : 1954(4287)년 6월 10일

2. 장 소 : 의회 의사당

3. 개회성립 :

1) 참석의원:19명

유정두, 이복주, 명남철, 김삼성, 김남진, 진복춘, 임일남, 김팔용, 김경희,
박찬규, 김경현, 오세일, 김영완, 이소규, 이재홍, 문택호, 이문길, 정응표,
김자홍,

2) 불참의원:1명

김길환

4. 개회선언 : 부의장

(오전 11시 15분)

5. 보고사항 :

◇ 박찬대 서기

- 제30회 의회 제1차 회의록 낭독

◇ 부의장

- 이의 없으면 통과하겠음

6. 부의안건 :

※ 시정 감사반 편성의 건

◇ 김남진 의원

- 반편성에 있어서는 각 상임분과별 이라던가 또는 각자의 전문적인 사
업의 관련성도 있고 하니 각자 희망대로 지원하여 편성할 것을 동의

(재청)

◇ 정응표 의원

- 전 의원수가 19명이니 매반 인원은 5명 범위내에서 편성할 것을 동의에 참가

◇ 부의장

- 표결하겠음

재석의원 18명중 전원 가결

◇ 진복춘 의원

- 교육청 감사는 문사위원회에 일임한데 희망하는 의원이 있으면 협조해서 하자 동의

※ 동의에 재청이 없으므로 폐기

◇ 이재홍 의원

- 교육청 가마는 2반에 넣되 2반에 감사 분량이 많으니 인원을 5명으로 해서 전적 담당할 것을 동의

(재청)

전원 가결

◇ 부의장

- 지금부터 반편성에 들어가겠음

※ 각기 지원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편성되었음

감사반별	감사원명
제1반	명남철, 임일남, 오세일, 김삼성, 진복춘
제2반	이문길, 김경희, 김남진, 정응표, 김경현, 이복주
제3반	이재홍, 문택호, 박찬규, 김길환
제4반	김자홍, 김팔용, 김영완, 이소규

◇ 진복춘 의원

- 체납자에 대한 차압 단행하는 질서를 재무과장으로부터 듣고 싶다.
긴급 동의

◇ 부의장

- 긴급 동의에 이견이 없으면 듣기로 하겠음

◇ 이현두 재무과장

- 차압 단행에 대하여 순서와 경위를 설명하겠음
(생략)

◇ 진복춘 의원

- 항간에 소리가 감정 차압이니 정실 차압이니 하는데 그 실례로서는 고지도 발부치 않고 차압을 하여 직시 물건을 인상 한다던가 어떤데는 차압을 해 놓고 몇 날이 되어도 인상치 않는 정실 차압도 있으니 시는 그런 일이 없을 것 이로데 이런 일을 참고로 삼아 해주기 바람

◇ 이재홍 의원

- 문교부 시책에 의하여 사범대학을 2도에 1교씩 설치 하기로 되어 이리나 군산, 광주에서는 맹렬히 운동을 전개하고 있으며, 우리 목포에서도 지난번 설치위원회가 조직되어 우리 의회에서도 김영완 의원이 위원이 되어 노력하고 있는데 우리 의회에서도 호응하여 결의문을 채택해서 상경하는 편에 드리자 동의

(재청)

전원 가결

※ 김경현 의원 퇴장

(오전 11시 55분)

※ 의장 보선의 건

◇ 진복춘 의원

- 대국적 견지에서 전 의원 참석해서 하면 좋으나 의회가 있을 때 시민들이 이목이 의장 보선이 있지 안나 하고 관심을 가지고 있으니 의사 일

정대로 하자

◇ 김남진 의원

- 초대 의원으로서 2년간 의회생활을 회고에 불진데 그 중에는 본의 아닌 알력과 투쟁으로 시행정에 지장을 초래했다는 것은 자타가 공인하는 사실이며, 이는 당초 구성에 원인이 있으며, 금반 5. 20 민의원 출마로 인하여 김채용의원과 유정두의장의 사퇴로 전후를 통해서 과거 분열된 공기는 완전히 사라지고 전 의원이 합심해서 시행정에 박차를 가하고 있는데 이번 보선을 통하여 또다시 과거 같은 분열이 우려되는 것이며, 회기한 가운데 전원이 합심해서 함으로써 시발전이 이루어 질 것이요.

나 개인으로는 전 의원이 하나되어 무투표로서 당선시킬 생각이며, 사소한 감정에서 할 것이 아니라 험악한 공기가 완화되어 화기에애한 분위기 속에서 하기 위하여 의장 보선은 보류할 것을 동의

(재청)

◇ 임일남 의원

- 각기 의사가 다르고 개성이 있는데 하나로 통일될 수 없을 것이며, 지금까지의 여러 시일의 공간을 두고도 합의되지 못했고 하니 금일 보선할 것을 개의

◇ 이복주 의원

- 의사일정에 부의안건으로 되어 있는데 거기에 동의나 개의를 있을수 없으니 의사를 진행하자

◇ 이재홍 의원

- 의장 선거를 가지고 10일전부터 말이 잇고 의원중에는 시내에 있는 이도 출석치 않고 출석했던 의원도 가보니 의장 보선을 보류한다는 것은 천부당 만부당한 일이니 의사일정대로 진행하자

※ 김남진 의원 퇴장

(오전 12시 10분)

◇ 진복춘 의원

- 감표의원은 의장이 지명할 것을 동의
(재청)
가결

◇ 부의장

- 감표위원에 김삼성, 의원을 지명

◇ 이문길 의원

- 전 의원 합석한 가운데 의장을 보선키 위하여 한번만 더 연기하고 부
의안건을 철회할 것을 긴급 동의
(재청)

◇ 임일남 의원

- 과거 교육위원이나 시장 선거에 있어서도 여러날을 두고 했으나 그 결
과가 별다름이 없고 법적으로도 3분지 2 이상 출석 되었으면 의사를 진행
하는 것이 민주원칙이요.
투표용지까지 배부 되었으니 이는 투표 행위이며, 진행에 들어 갔으니
동의나 규칙이 있을 수 없다.

◇ 부의장

- 긴급 동의에 대하여 표결하겠음
재석의원 16명중 가 6, 부결

◇ 부의장

- 부결로 인하여 투표를 시작하겠음 (오전 12시 25분)

※ 투표 도중 이문길, 문택호, 명남철 의원 퇴장 (오전 12시 28분)

※ 문택호, 명남철 의원 입장 (오전 12시 32분)

◇ 정응표 의원

- 투표 도중 퇴장으로 인하여 성원이 미달될 시 투표한 것에 대하여는 유효인가? 무효인가? 간명하기 바람

※ 의원간에 유효를 주장하는 측과 무효를 주장하는 측으로 양분되어 상호 논쟁이 약 20분간 있었음
(생략)

◇ 부의장

- 성원 미달할 시 투표한 것이니 무효를 선언하고 다시 투표하자.

◇ 이복주 의원

- 재적 3분지 2는 의장 선거에 필요한 수요

과반수 면은 회의가 진행할 수 있고 처음 회의가 시작할 때는 16명 참석했으며, 도중에 나갔다가 회의가 진행중이므로 법적으로 보아 유효인 것이니 그대로 진행하자

◇ 김삼성 의원

- 시간을 천연시키는 것은 수치스러운 일이니 공기를 완하시키기 위하여 5분간 휴회할 것을 동의
(동시에 재청이 없으므로 폐기)

◇ 정응표 의원

- 지방 자치법에는 재적의원 3분지 2 이상 출석으로 의장 선거를 개시한다는 명백한 조문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재 19명 재적이므로 3분지 2에 달하는 수는 13명인데 부족수인 11명으로 투표를 계속하고 있음은 불법적 행위이다.

법을 준수해야 할 의회에서 불법행위를 감행하고 있으니 이런 비합법적 의회에는 참석하고 있을 수 없어 본 의원은 퇴장한다.

※ 정응표 의원 퇴장

(오전 12시 50분)

◇ 부의장

- 투표할 수 있는 수의 성원 미달로 산회선언

(오후 1시)

◇ 부의장

- 회의록 서명에 이복주, 김남진 의원을 지명

위 회의록을 확인하고 자이 서명 날인함

1954(4287)년 6월 10일

부의장 : 이소규

의원 : 이복주

” : 김남진

작성자 서기 : 천세봉

제30회 임시회 목포시의회본회의회의록(제 3 차)

1. 일 자 : 1954(4287)년 7월 15일

2. 장 소 : 의회 의사당

3. 의회성립 :

1) 참석의원 : 20명

유정두, 이복주, 명남철, 김삼성, 김남진, 이재홍, 진복춘, 임일남, 김팔용,
김경현, 문택호, 이문길, 정응표, 김길환, 김경희, 박찬규, 김자홍, 오세일,

김영완, 이소규, 김창현

2) 불참의원 : 무

4. 개의선언 : 부의장

(오전 10시 20분)

5. 보고사항 :

◇ 박찬대 서기

- 제30회 의회 1, 2차 회의록 낭독

◇ 부의장

- 회의록에 이의 없으면 통과하겠음

※ 김창현 의원 소개의 건(제3선거구 보선)

◇ 김창현 의원

- 만장의 박수갈채리에 등단하여 인사한 다음 착석하였음

※ 삼학도 공사 중간보고의 건

◇ 부의장

- 옹크라 원조에 의존된 본 공사는 현재 미국에서의 영달통지만 기다리고 있으며, 우선적으로 착수 하겠다는 중앙청 관계 직원의 연명이 있었다는 요지의 보고가 있었음

※ 산정동 공설시장 부지 교섭결과의 건

◇ 이문길 의원

- 순천철도국에 가서 교섭한 결과 해 부지에 대한 대여 승인을 받고 계약서까지 지참 하였다는 요지의 보고가 있었음

※ 정병조씨 연동 제방관계 소송결과의 건

◇ 박찬대 서기

- 법원의 판결 주문만 낭독
(내용 별첨)

※ 산업위원회 회의 상황의 건

◇ 이재홍 의원

- 별지 회의록에 의하여 보고가 있었음

※ 대안동 배급소 보관중인 총해 및 변질 수입미 처분의 건

6. 토의사항 :

◇ 정응표 의원

- 부의안건의 순서를 의장 선거부터 시작할 것을 동의

※ 동의에 재청이 없으므로 폐기

※ 제4회 시정감사 결과 보고의 건

◇ 부의장

- 감사 보고는 제1반부터 순서적으로 해주시기 바람

◇ 제1반 김삼성 의원

- 별지 감사서에 의한 종합적인 결과 보고가 20분간 있었음.

◇ 진복춘 의원

- 일반회계, 부과, 징수계, 각동 관계의 감사보고가 별지 감사서와 여히 있었음.

◇ 김영완 의원

- 국채사무에 대한 감사결과 보고가 별지 감사서에 의하여 약 30분간 있었음

※ 제1반 감사보고 완료

◇ 김창현 의원

- 의장 선거는 전 의원 참석한 가운데 실시하기 위하여 더 기다려서 하자 동의
(재청)
미 표결

◇ 김경희 의원

- 오전 회의 일로 종결할 것을 동의
(재청)

◇ 부의장

- 표결하겠음
재석의원 18명중 가 18
전원 가결

◇ 부의장

- 휴회선언

(오전 12시 25분)

※ 부의장의 사정으로 고령자인 박찬규 의원이 임시 사회로 속회 선언

(오후 1시 50분)

※ 임시 의장 선거의 건

◇ 이재홍 의원

- 고령자이신 의원으로 임시 의장으로 추대할 것을 동의
(재청)

◇ 박찬규 의원

- 표결하겠음
재석의원 14명중 가 13
가결

◇ 임시의장

- 산회선언

(오후 1시 58분)

제30회 임시회 목포시의회본회의회의의록(제 4 차)

1. 일 자 : 1954(4287)년 7월 16일

2. 장 소 : 의회 의사당

3. 개의성립 :

1) 참석의원 : 20명

유정두, 이복주, 명남철, 김삼성, 김남진, 이재홍, 진복춘, 임일남, 김팔용,
김경현, 문택호, 이문길, 정응표, 김길환, 김경희, 박찬규, 김자홍, 오세일,

김영완, 이소규, 김창현

2) 불참의원 : 무

4. 개회선언 : 부의장

(오전 10시 30분)

※ 제4회 시정감사 결과 보고의 건

◇ 부의장

- 작일에 계속해서 제2반부터 보고해 주기 바람

◇ 제2반 김남진 의원

- 사회과, 대성병원, 시립병원, 각동 관계의 사무감사 결과에 대하여 별지
감사서와 여히 보고가 약 15분간 있었음

◇ 정응표 의원

- 노동계, 청소사업소, 죽교동 공설시장, 군경원호회, 구호진료소, 교육청
감사결과 보고가 약 30분간 있었음

(별지 감사서에 의함)

※ 제2반 감사보고 완료

◇ 제3반 박찬규, 이재홍 의원

- 제3반의 종합적인 감가결과가 별지 감사서와 여치 보고 하였음

※ 제3반부터 감사보고 완료

◇ 제4반 김자홍 의원

- 제4반의 종합적인 감사결과가 별지 감사성에 의하여 보고하였음

※ 제4반 감사보고 완료

◇ 명남철 의원

- 동정세 부과 징수는 동자치적으로 맡길 수 있도록 회의의 결의로서 지사에게 건의하자 동의

※ 동의에 재청이 없으므로 폐기

※ 의장 선거의 건

◇ 정응표 의원

- 의장 선거의 감표위원의 선정은 의장에게 일임할 것을 동의
(재청)
가결

※ 김남진, 명남철 의원으로 지명 선정

◇ 김삼성 의원

- 5분간 휴회할 것을 동의
(재청)

◇ 부의장

- 표결하겠음
재석의원 15명중 가 9

가결

◇ 부의장

- 휴회선언

(오후 1시 40분)

◇ 부의장

- 속회선언

(오후 1시 46분)

◇ 부의장

- 의장 선거에 들어 가겠음

※ 투표 개시오후 1시 48분

※ 개 표 상 황

득표자명	개표상황		비 고
	제1차 투표	제2차 투표	
박찬규	6	13	당 선
이문길	8	5	
이소규	4		
기 권	1	2	
계	19	19	

◇ 부의장

- 의장에 박찬규 의원 당선을 선언

◇ 의장 박찬규

- 당선인사가 있었음

※ 박찬규 의장으로 사회 교체

◇ 의장

- 산회선언

(오후 1시 58분)

제30회 임시회 목포시의회본회의회의록(제 5 차)

1. 일 자 : 1954(4287)년 7월 19일

2. 장 소 : 의회 의사당

3. 개의성립 :

1) 참석의원 : 15명

박찬규, 이복주, 명남철, 임일남, 김팔용, 김길환, 김경희, 오세일, 김영완
이재홍, 문택호, 이문길, 정응표, 김자홍, 김창현

2) 불참의원 : 5명

이소규, 김삼성, 김남진, 진복춘, 김경현

4. 개회선언 : 의장

(오전 10시 30분)

5. 토의사항 :

※ 의장 취임사

◇ 의장

- 제2대 의장으로서 취임하신 박찬규 의장의 인사가 5분간 있었음

◇ 하동현 시장

- 의장 취임에 대한 축사가 있었음

※ 시정감사 결과에 대한 시장 인사

◇ 하동현 시장 인사요지

1. 공무원 부양가족 수당 관계서류 정비 및 공정 배급의 건
2. 국민반 지도강화의 건
3. 회계서류 대결(시장)에 관한 한계의 건

4. 회계장부(명확) 정리의 건
5. 잡비 접대비 지출의 최대한 억제 건
6. 부과공평, 징수민속, 처분공정의 건
7. 구입물품에 대한 장부 정비의 건
8. 징수 가능자에 대한 강력 징수의 건
9. 국채증권 배건 처리의 건
10. 직원간 융화 도모의 건
11. 시립의원 및 대성병원 위치 변경추진의 건
12. 청소사업소(전기, 전화, 마차 시설)의 건
13. 죽교동 공설시장 운영의 건
14. 군경원호회 전 참사 김종대 유용금 정리의 건 및 직원 배치의 건
15. 방출미 대금 회수의 건
16. 도살장 써공사의 건
17. 대안동 배급소 시설 보충의 건
18. 양곡 부족량 정리 및 공가마 처분의 건
19. 수특사무 운영의 건

※ 교육청 감사결과에 대한 교육감 인사

◇ 교육감 인사요지

1. 국민학교 수요비 배당의 불균형에 대하여 앞으로 공정을 기하겠다.
2. 교육세 징수원이 독촉 수수료 7만원 유용과 독촉 수수료를 받지 않는 건에 대하여 착복 전액을 엄정 정리중이며, 독촉 수수료를 받지 않는 점은 원세 받기도 곤란한 점에서 받지 않았으나 원세의 유용은 전연 없다.
3. 사친회비 징수에 대해서는 예산 통과 당시에는 상부로부터 사친회비 폐지에 대한 엄중 지시에 의해서 사친회비를 안받겠다고 공약을 했으나 2개월이 못가서 교직원 처우 문제가 예정같이 되지 않아 사친회비를 징수케 된 것이며, 액은 도지사가 정한다과 되어 있어 교육감 으로서는 최고 기준액인 150환을 초과치 않도록 감독하는 권한밖에 없다.

※ 대 행정부 질의의 건

◇ 김영완 의원

1. 교육세 작년도 1기분의 사무인계 불이행의 건
2. 예산 편성시는 반드시 각 국민학교로부터 예산 요구서를 받아서 참고해야 할 것인데 전연 받지 않고 있으며
3. 사친회비에 대하여 광주시와 대조해서 설명하기 바라며
4. 소모품 수불에 있어 학교 당국과 교육청간에 공문식으로 연락되지 않고
5. 교육청과 시민간에 적대시하고 있는 점
6. 예산 통과시 공약할 당시의 감정으로 말씀해 주기 바라

◇ 신현중 교육감

- 답변요지(질의 1, 2, 6에 대하여)

1. 시의 형편에 의해서 사무인계가 늦어졌다.
2. 사친회비에 대하여는 광주는 150환의 최고 기분액을 받고 있음
6. 교육청과 시민간에 적대시한 점은 교육청 생긴 것이 아직 영아이기 때문이요. 구성에 있어 애매한 점에서 원시하는 감이 있으며, 공약했다는 점에 있어서는 국가에서 못받게 했다가 받으라 한 것이니 나로서는 최초 어긴 바는 없다.

◇ 김영완 의원

- 교육예산 통과 후에도 자모회비도 받고 있으며, 서울로 보아 광주와 동일하게 받는 것은 모순이다.

◇ 김용준 서무과장

- 답변요지(김영완 의원)

2. 예산 편성시는 각 학교로부터 예산 요구서를 제출토록 통첩을 했다.
4. 소모품 수불상황 장부 정리에는 정확히 정리토록 지시했고 앞으로도 더욱 정확성을 기하겠다.

◇ 김영완 의원

- 감시당시 예산 요구서를 안받았다는 말을 어째서 했는가 서무계정 설명하기 바람

◇ 조희대 서무계장

- 각 학교에서 제출된 요구서는 엄청난 S수자라 참고가 될만한 것이 못 되어 받지 않았다.

◇ 임일남 의원

- 사친회비에 있어 교육감은 지시액만 초과치 않도록 감독하는 권한밖에 없다하나 예산 통과시는 안받겠다고 공약하고 오늘 답변은 모순이다. 예산만 통과해 주면 사친회비를 받지 않고 이 예산 가지고 한다 해놓고 또 다시 징수하게 되니 사친회비를 안받으면 교육청이 운영 못해서 그러는지 알 수 없다.

◇ 정응표 의원

- 각 학교의 실정과 학부형의 실태도 다르므로 사친회 대의원회에서 결정해야 할 것을 교육위원회에서 130환의 결정은 각 학교 실정을 무시한 월권적인 행동이며, 또는 130환으로 인상할 때는 미리 의회에서 받지 않겠다고 공약한 것이니 의원들과 상의해야 옳은 일임에도 불구하고 전연 그런 사실이 없으며, 사무감사시에도 말할자리라도 왜 안 했는가? 우리가 알게되면 악영향이 있을까봐 슬쩍 슬쩍 하는 지 알 수 없으나 상의 한번 없었다는 것은 유감이다.

◇ 이재홍 의원

1. 1년 6개월이나 되는 방출미대 착복한 것에 대하여는 사직 당국에 고발해서 처리 하겠다는 과장의 말이 있었는데 이에 대한 처리방안과
2. 공가마 35, 000매에 대한 처분 문제와
3. 30가마 감량에 대한 정리와
4. 사회과의 오물 수수료는 받아 가면서 노를 푸지 않아 별도로 한 지게에 2, 30환씩 내고 푸게 되는 모순된 청소사업의 해결책과
5. 총무과에 있어 제6회 국채 배당률에 있어 광주 20%에 대한 목포 18%의 불합리한 점을 설명하기 바람

◇ 박연태 산업과장

- 답변 요지(질의 1, 2, 3에 대하여)

1. 방출미대 40여만환의 착복한 건에 대하여는 5월 10일자로 사직당국에 교발 했으며
2. 감량분에 있어서는 최소한 9개월 이상 보관된 것이라 침수 혹은 해충 변질로 감량 되었으며
3. 공가마 처분에 있어서는 앞으로 산업위원회에 회부해서 조치를 취하겠다.

◇ 윤주현 사회과장

- 오물제거 문제에 있어서는 오물세를 강력히 징수하여 마차 5대를 보충해서 청소에 적극 노력하겠다.

◇ 김두원 지도계 주무, 김문수 시정계 주무

- 국제 할당에 대한 경위를 설명
(설명요지 별지 첨부)

◇ 이복주 의원

- 금반 사친회비에 대하여 시의원들은 시민들로부터 무엇하는 시의원이냐는 비난을 받고 있다.

사친회비를 인상할 때에 절차도 받지 않고 상의 한번 없었다는 것은 의회란 의결기관을 무시한것이다.

◇ 김자홍 의원

- 예산 통과시 교육감이 공약했던 발언 요지의 회의록을 낭독한 다음 국고보조 감액 500만환에 해당되는 사친회비를 징수케 되면 매인당 30환 정도 밖에 안되는데 130환 받는 부당성과 종전에는 한 가정에서 2, 3명이 다니면 어느 정도 감액이 되었는데 전혀 그런 일이 없는 것은 모순이다.

※ 이하 의원간의 토의 내용 생략

◇ 정응표 의원

- 사친회비 인상 후에 자모회비를 받는 교직원이 있다면 여하히 처단할 것인가?

◇ 신현중 교육감

- 밝히는 데로 도와 상의해서 근절토록 하겠다.

◇ 이재홍 의원

- 교육청 관계 토론만 중지하고 사친회비를 받냐 안받냐는 것은 문교 사회위원회에서 신중 검토한 다음 차기 의회세 논의할 것을 동의
(재청)

◇ 명남철 의원

- 결정에 따라 2개월분 징수한 분중 남은 것은 반환할 것을 동의에 첨가

◇ 의장

- 표결하겠음
재석의원 16명중 가 10
가결

◇ 김경현 의원

- 오전 회의는 일로 중지하고 휴회할 것을 동의

◇ 의장

- 표결하겠음
재석의원 16명중 가 9
가결

◇ 의장

- 휴회선언

(오후 1시 5분)

◇ 의장

- 속회선언

(오후 2시 20분)

◇ 명남철 의원

1. 가축 장려하는 의미에서 좋은 일이나 시중의 위생상 미치는 영향과
2. 재무과에 있어 결손처분하는 데 간단한 직원 복명서 한장에 의해서 처분한 것과 다액 유령 부과가 있다는 점에 대하여 말씀해 주기 바람

◇ 하동현 시장

- 가축장려 구역은 주로 변동에 국한되어 있으며, 시주는 금지되어 있다.

◇ 이현두 재무과장

- 처분의 공정과 유령 부과가 없도록 정확을 기하겠다.

◇ 정응표 의원

1. 동정 운영면을 보면 동장이 그만둔지 1년이 넘도록 사무인계 불이행으로 내용 파악하기 곤란했으며, 말로만 동정 강화한다 하고 실지 이행치 않는 이유와
2. 구호양곡의 배급량이 절반으로 감해졌는데 배급 상황을 걱정을 기하지 못하고 있으니 이번 6월분부터 확실한 실태를 파악해서 배급할 용의가 없는가?

◇ 김자홍 의원

- 구호물자 부정배급 이유화 구호위원회 직제를 설명해 주기 바람

◇ 김영완 의원

1. 제5회 국채 소화시 서, 시, 동직원 주식대 처리방도
2. 영국기자의 말에 의하면 도로표 장비로서 운크라에서 보조가 광주는 4만달러고 목포는 4천달러밖에 안된다는데 건설과장은 이 일을 알고 있는가?

◇ 의장

- 명일 계속하기로 하고 오늘 회의는 일로 산회 하겠음. (오후 3시 30분)

제30회 임시회 포시의회본회의회의록(제 6 차)

1. 일 자 : 1954(4287)년 7월 20일

2. 장 소 : 의회 의사당

3. 개의성립 :

1) 참석의원 : 17명

박찬규, 이복주, 명남철, 이재홍, 진복춘, 임일남, 김팔용, 김경현, 문택호, 이문길, 정응표, 김길환, 김경희, 김자홍, 오세일, 김영완, 김창현

2) 불참의원 : 3명

이소규, 김삼성, 김남진

4. 개회선언 : 의장

(오전 10시 20분)

5. 토의사항 :

※ 목포시 중앙도매시장 사용 및 관리조례 제정에 관한 산업위원회 회의 상황 보고의 건

◇ 진복추 의원

- 회의록과 여히 보고가 있었음

◇ 정응표 의원

- 어제 질의에 계속해서 행정부의 답변을 바랍

◇ 윤주현 사회과장

1. 6월분 배급량이 절반 감해질 것은 사실이며, 종전 1개월분 배급 했으나 이달부터서는 15일간치만 배급할 것이요.

2. 배급의 적정을 기하지 못했다는 점은 앞으로 조사해서 공정을 기하겠으며, 그중 30%를 주려서 각 동에 배부할 것이며, 각 동에서는 배당

인원수에 의하여 동구호위원회에서 대상자를 선정해서 배급할 것이다. 앞으로 배급양곡이 주려지면 조선구호령 65조에 의해서 배급할 수 밖에 없다.

◇ 이춘흠 건설과장

- 도로포장 공사비 보조에 대하여 광주는 상무회관이 있어 왕래가 빈번한 관계상 도로포장 공사에 보조해 달라고 요청한 사실은 있으나 4만달러의 보조는 아직 없고 직원까지 보내어 물어 보았으나 그런 일이 없다 한다.

◇ 김영완 의원

- 평화극장 옆 도로부터 보광동간 도로를 고치고 있는데 광주에 빌려준 로라기를 찾아다 영속성 있도록 견고히 고쳐야 되는데 모래만 뿌리는 정도이며, 고친 도로가 도로 파손되어 있는데 이때 대한 설명을 요함

◇ 이춘흠 건설과장

- 국부적인 떼움질하는 수리는 로라기가 필요치 않으며, 광주는 구루마 바퀴가 다이아를 이용하는데 목포는 그렇지 않아 도로가 파손되기 쉽다.

◇ 정응표 의원

- 금년도 추가개정 예산의 내용을 보면 해수욕장 및 준설공사비가 계산되어 있음은 시를 위해 경하스러운 일이며, 아직도 시민들의 갈망한 것이 많다.

초중등생이 도로상에서 책을 읽고 있는 현상을 볼때 도서관이 없다는 것이 유감스러운 일이며, 창고에 사장되어 있는 도서가 1권씩 없어져 가고 있는 사실이니 아무 건물이라도 택해서 하루빨리 개설할 것과 목포는 공설운동장이 없는데 광주는 공설운동장을 만들고 있다는데 목포는 할 수 없는가?

◇ 하동현 시장

- 도서관 개관 예산은 들어 있으니 집을 비어주지 않아 늘어진 것이나 하루빨리 비도록 재촉하고 있으며, 만일 안될 때면 다른 방도를 취해서 하겠다.

운동장 대지는 지주로부터 승락을 받았으나 자금이 문제이다
전주나 다른 시를 참고해 보면 형무소에서 실비로 제공해도 경비가 200
만원이 들고 있다.

며칠전 형무소에 가서 교섭을 해보았으나 목표는 1년 이상 복역하는 외
극죄수가 소수이며, 문태교가 끝나지 않고 있어 연내로는 안된다 하나 적
극 교섭해서 하루빨리 만들겠다.

◇ 진복춘 의원

1. 자치제 실시하는 이 마당에 고지 주민들의 혜택을 주기 위하여 제2
수원지를 복구해야 할 것이며
2. 제 3 공동묘지를 쓰게 되면 원거리에 사는 주민들의 편리를 도모하
는 의미에서 영구차를 설치할 필요가 있다
3. 먼지가 많은 목포 시내에 살수차가 극히 필요하며
4. 당시는 상공도시인 만큼 상공계를 둘 필요성이 있으며
5. 체납처분대가 자동차를 타고 다니며, 차압을 하고 있는데 휘발유 한
방울이라도 절약하는 의미에서나 납세인에 대한 감정을 사지 않기
위하여 될수 있는대로 도보로 할 것이며
6. 중동시장의 제반 시설을 확충해서 시장으로서의 면모를 갖추도록 해
주기 바람

◇ 하동현 시장

1. 제1수원지는 곧 복구하겠다.
2. 옥암리 묘지에 있어서는 갱정예산이 통과되면 도로의 확장이라던가
배토, 배사 또는 매립을 할 것이다.
3. 영구차 설치에 있어서는 희망하는 사람도 있으나 만일 없으면 곧 하
겠크럼 할 것이며
4. 살수차는 차후 재정을 염출해서 3, 4대 가량 설치할 것이며
5. 상공계나 공보계는 존속하고 있으며, 앞으로 계 주임자를 배치할 것
이며
6. 자동차는 주로 체납물품을 운반하는데 많이 쓰고 있으며, 15명씩 한
꺼번에 돌아 다니게 되면 몇집 돌아 다닐 수 없게 되어 자동차를 사
용하고 있으나 앞으로 법에 의하여 시민의 감정에 어김없는 일을 하

겠다.

7. 명년도에는 남교동 간이시장과 중동시장을 시장 다음게 하겠다.

◇ 김경현 의원

- 한가지 한가지를 꼭 실천할 수 있도록 약속해 주기 바란다.

기이 있는 중동시장의 예산은 없고 신설시장만 편성되고 있으며, 한가지 한가지를 완전하게 해 놓고 다음에 옮겨야 할 것이요.

정응표 의원 말대로 불우한 학생들을 위해서 도서관을 빨리 개설해야 할 것이다.

◇ 하동현 시장

- 개인한테 빌려 주었다면 장장 비게 하였으나 재향군인회라 우리가 하나라도 구득해서 줄 처지이니 느려진 것이나 조속한 시일내에 안되면 분과위원회를 소집해서 상의 하겠다.

◇ 정응표 의원

- 불미한 국채 사건으로 말미암아 제6회 국채가 나온 뒤 시민들의 비난이 자자하는데 이러한 악영향에 대하여 시장은 여하한 방침이 서 있는가?

◇ 하동현 시장

- 제6회 국채 소화에 있어서는 시에 서 현금을 취급 않도록 방법을 변경했으며, 이런 방침을 각 동에 주지했다.

◇ 이복주 의원

1. 총무과에서 물품을 구입하는데 정당한 경쟁입찰제를 시립하고 있는가?

혹은 한군데만 치중하는 정실 입찰이라던가 단합 입찰을 하고 있지 않는가?

2. 용당 도선정 운영 관계의 앞으로의 대책 여하?

◇ 이제국 총무과장

- 제가 부임한 후로는 경쟁입찰제를 하고 있다고 보며, 앞으로 공정을 기

하겠다.

◇ 하동현 시장

- 의회의 결의에 의해서 도선장을 번영회에 대행시킨 것이니 또다시 의회의 결의에 의해서 시직영으로 하라하면 하겠다.

◇ 진복춘 의원

- 시영 주택은 고치지는 않고 점점 허물어져 가는 형편이요.
주택에서 사는 사람도 매각에 달리는 요청도 있고 하니 매각 처분해서 다른 기본 재산을 취득할 수 없는가?

◇ 김영완 의원

1. 진 의원의 말대로 시영 주택은 점점 허물어져 가고 있으니 이것을 팔아서 도선을 살수 있는가?
2. 시에서는 무슨 일이던지 시중심으로만 한 까닭에 동행정에는 무관시하는 감이 있는데 동에도 우수한 직원을 배치할 수 없는가?

◇ 하동현 시장

1. 시영 주택 매각 처분에 있어서는 뚜렷한 목표가 서면은 할 수 있을 것이며
2. 동행정에 있어서는 책임자로서 기가막힐 일이며, 회계가 갈라져 있기 때문에 이쪽 돈도 저쪽으로 못쓰게 되어 곤란하나 거반 말대로 동자치제 실시에 대한 건을 도에 건의 해서 되면 좋고 안되면 응분의 대처를 하겠다.

◇ 이복주 의원

- 용당 도선장 수입면을 보면 시청에 수입되는 금액이 도선장에서 쓰고 있는 경비 보다 적다는 것은 안될 말이다.

이런 일이라면 차라리 시자체에 움직임이 좋은 일이라 생각해서 번영회에서 행했던 용당 도선 운영을 시직영토록 하기 위하여 시로 반환할 것을 동의

(재청, 5청)

◇ 김팔용 의원

- 이 문제에 대하여 번영회에서 상임위원회를 열려고 했으나 하지 못하고 어제 회장을 만나서 타협을 보아 내 24일 운영했던 결과를 시민에게 알리도록 되었는데 오늘 말이 있기에 그 내용을 말씀하겠습니다.

(수지내용 설명 생략)

채무관계만 처리하면 낸길려고 했으며, 이 채무는 시발전을 위한 건설 사업비로 부채된 것이니 이 문제를 여하히 할 것인가? 토의해서 해결해 주기 바란다.

◇ 이복주 의원

- 용당 도선장만이 운영하려는 번영회가 아니요.

앞으로 번영회는 존속할 것이니 32만환의 채무를 여하이 할 것인가 하는 말은 안되며, 번영회에서 한 것이 부적당한 것과 시에서 직영하는 것이 좋기에 반환하자는 것이니 이 자리에서 흑자, 적자의 말은 안될 말이다.

앞으로 직영하게 되면 특별회계를 둘것을 동의에 참가

◇ 임일남 의원

- 시의회에서 적자문제를 논의할 성질이 못되며, 만일 흑자를 내가지고 남은 돈을 의회에서 여하히 할 것인가를 먼저 논의되어 질 문제이다.

이 문제는 직영을 하게 되면 사무 인계시 번영회의 채무 관계의 내용을 내 무위원회에 회부해서 결정할 것을 동의에 참가

※ 동의집 수락

◇ 명남철 의원

- 명일부터서 직영할 것을 동의에 참가

※ 동의집 수락

◇ 의장

- 표결하겠습니다

재석의원 15명중 가 15

가결

◇ 명남철 의원

- 피폐되어 가는 동행정의 보강책과 애로를 타개하기 위하여 도에 건의한다던가? 교섭 한다던가? 하기 위해서 가칭 타개위원회를 구성할 것이며, 본 위원회의 그것에는 의장과 2명, 동대표의 5명으로 하되 의원 2명 선정은 의장에게 일임할 것을 동의

(재청, 3청)

◇ 의장

- 표결하겠음

재석의원 13명중 가 11

가결

※ 위원 2명에 오세일, 김영완 의원을 지명

※ 동장 선정은 시장에게 일임

◇ 이재홍 의원

- 대안동 배급소 보관 양곡중 30가마니 감량분에 대하여는 담당 취급자별로 취급한 양과 그 양에 대한 얼마 정도 감량한 것을 비률을 내서 변상시킨다던가 결손 처분 한다던가를 산업위원회에 회부해서 토의할 것을 동의

(재청)

◇ 이복주 의원

- 과년도 부패미를 처리않고 나둔것까지 산업위원회에서 논의할 것을 동의에 참가

◇ 임일남 의원

1. 오물을 내버리기 위하여 밤을 이용해서 선창가에다 내버리고 있는 현상인데 오물 집합소를 설치해야 될 것이며

2. 호별세 등급 문제에 있어 소홀히 취급되고 있다.

거반 등급 사정에 있어 산정동 1구동은 당시 동장이 부재중이며, 등급이 저하되지 않고 그때부터 올려져 있는것이 아직 시정되어 있지 않고 있으니 대국적으로 시정할 구체적인 방안이 없는가?

◇ 의장

- 먼저 이재홍 의원의 동의를 표결하겠음
재석의원 13명중 가 13
가결

◇ 윤주현 사회과장

- 구루마 5대, 말 다섯필을 사서 청소사업에 보강 하겠으며, 오물 집합소는 도에서 세멘트만 오면 곧 설치 하겠다.

◇ 하동현 시장

- 등급 조정에 있어서는 심사위원회를 구성해서 할 예정이며, 전반의 예를 보면 등급이 미리 시민들에게 알려져서 시행정하는데 애로가 있었으나 급반에는 심사위원을 엄정 선정해서 하겠다.

◇ 이복주 의원

- 대 행정부 질의응답은 일로 종결할 것을 동의
(재청)
가결

※ 목포시 중앙도매시장 사용 및 관리조례 제정의 건

◇ 박연태 산업과장

- 각 조례안을 낭독

◇ 임일남 의원

- 본 조례안은 산업위원회에서 통과도 했으니 2독회를 생략하고 원안대로 통과할 것을 동의

(재청)

※ 본 조례안중 제3조중 생어, 염어 두가지가 삭제로 되었는데 보류로 할 것을 위원회 회의록을 수정 하겠음

◇ 의장

- 표결하겠음

재석의원 13명중 가 13

가결

※ 중앙도매시장법 폐지 운동 방지에 대한 건의 건

◇ 명남철 의원

- 중앙요료에 건의하는 것을 개설자인 시장에게 일임할 것을 동의
(재청)

◇ 의장

- 표결하겠음

재석의원 12명 가 12

가결

※ 목포시세조례 개정의 건

◇ 김자홍 의원

- 행정부의 설명을 듣기로 하자

◇ 이제국 총무과장

- 조례개정에 대한 설명이 있었음

◇ 김자홍 의원

- 1, 2독회를 생략하고 원안대로 통과할 것을 동의
(재청)

◇ 의장

- 표결하겠음
재석의원 11명중 가 11
가결

※ 목포시 공설시장 사용 및 관리조례 개정의 건

◇ 이재홍 의원

- 이 정도의 인상은 좋은 것 같으니 원안대로 통과할 것을 동의
(재청)

◇ 의장

- 표결하겠음
재석의원 11명중 가 11
가결

◇ 진복춘 의원

- 오늘 회의는 일로 휴회할 것을 동의

※ 재청이 없어 폐기

◇ 이재홍 의원

- 1954(4287)년도 목포시 일반회계 및 각특회계 세입세출 추가개정 예산
의 건 외 미심의 안건 5건은 각 전담분과 위원회에 회부해서 심의할 것을
동의
(재청)

◇ 의장

- 표결하겠음
재석의원 11명중 가 11
가결

◇ 의장

- 회의록 서명에 김영완, 이재홍 의원을 지명

6. 산회선언 : 의장

(오후 2시 20분)

위 회의록을 확인하고 자이 서명 날인함

1954(4287)년 7월 20일

의장 : 박찬규

의원 : 김영완

” : 이재홍

작성자 서기 : 천세봉

제30회 임시회 목포시의회본회의회의록(제 7 차)

(오 전)

1. 일 자 : 1954(4287)년 7월 28일

2. 장 소 : 의회 의사당

3. 개최성립 :

1) 참석의원 : 17명

이소규, 이복주, 명남철, 김삼성, 김남진, 이재홍, 진복춘, 김팔용, 김경현,
문택호, 이문길, 정응표, 김경희, 김자홍, 오세일, 김영완, 김창현

2) 불참의원 : 3명

박찬규, 임일남, 김길환

4. 개최선언 : 부의장

(오전 11시)

5. 토의사항 :

※ 제3회 제6차 회의록 보고의 건

◇ 박찬대 서기

- 전차 회의록을 낭독

◇ 부의장

- 회의록에 이의 없으면 통과 하겠음

※ 산업위원회 회의상황 보고의 건(양곡 감량분 처리)

◇ 이재홍 의원

- 별지 회의록과 여히 보고하였음

※ 문교사회위원회 회의상황 보고의 건(추가예산)

◇ 정응표 의원

- 별지 회의록과 여히 보고하였음

※ 내무위원회 회의상황 보고의 건(추가예산)

◇ 김영완 의원

- 별지 회의록과 여히 보고하였음

※ 중앙도매시장법 폐지운동 방지에 대한 건의의 건

◇ 이제국 총무과장

- 건의문을 작성하여 발송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음

◇ 진복춘 의원

- 각 동에서는 재정난으로 인하여 운동면에 곤난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온 금동장은 사재를 내서 동민의 부담을 덜기 위하여 동사무소를 건립해서 동유 재산으로 회사했다는데 사실 동유재산으로 되어 있는가?

동장도 이 자리에 참석했으니 동장으로부터 들어보아 사실이면 감사장을 드리자 긴급 동의
(재청)

◇ 정응표 의원

- 본건은 의장과 시장에게 일임하여 사무적으로 내용을 조사해서 하는 것이 타당한 일이니 사무당국에 일임하자

※ 공생원 분쟁문제 해결 대표 파견의 건

◇ 부의장

- 본 건에 있어서는 도에서도 해결 못짓고 내일 도대표 몇 분이 서울에 올라가서 해결하기로 되어 우리 의회 대표로 의장이 가시기로 되었으나 의장께서 몸이 아파서 가시지 못하게 되었으니 의원중에서 한 분 선정해서

보내자

◇ 김자홍 의원

- 분쟁사건에 대한 경위를 사회과장으로부터 설명해 주기 바람

※ 사건 내용이 대하여 사회과장, 김자홍, 이복주 의원으로부터 설명
이 있었음

(내용생략)

◇ 정응표 의원

- 사건의 내용은 잘 아는 사실인데 먼저 의회 대표를 선정한 다음 이 문
제에 대한 의회의 태도를 결정해야 될 것이다.

◇ 하동현 시장

- 본 건에 대한 시의 태도는 다섯가지 방침에 의해서 해결 지을려는 지
사의 태도에 순응해서 하겠다.

1. 복리회에 가입된 아동 160명을 양분
2. 이웅씨는 재산에 관한 권한을 주장할 수 없다.
3. 이사진의 반수는 경교인으로 할 것
4. 윤학자는 평직원으로 할 것

◇ 이문길 의원

- 명일 파견할 의회 대표로서는 내용을 잘 아는 김자홍 의원을 선정할
것을 동의

(재청)

전원 가결

◇ 부의장

- 오전회의는 일로 휴회하고 오후회의는 오후 2시부터 속회 하겠다.

(휴 회)

◇ 부의장

- 속회선언

(오후 2시 30분)

※ 목포시 방공시설 부역 현품 부과 징수조례 제정의 건

◇ 김남진 의원

- 본 건 내용에 대하여 제안자 측의 क्ष여을 바람

◇ 이제국 총무과장

- 별지 설명서에 의하여 내용을 설명 하였음

◇ 김남진 의원

- 본 건은 전국 각지에서 실행하는 일이고 전시하 필요한 것이니 제6조
까지 1, 2독회를 생략하고 원안대로 통과할 것을 동의
(재청)

◇ 부의장

- 표결하겠음

재석의원 17명중 가 17

가결

※ 인분 자유흡취분 면제의 건

◇ 정응표 의원

- 오물 수수료는 받아 가면서 각 가정에서는 한지게 2, 30환씩 내고 푸는
현상이며, 당국에 대한 시민의 비난이 자자 하거니와 요사히 여러날의 장
마와 논번기로 각 가정에 이분이 가득차 있으며, 촌에서 와서 자유로히 퍼
간것까지 요금을 받고 있는 관계상 촌에서도 와서 푸지 않고 있으므로 하
절기 3개월간만 요금을 면제해 달라는 서장의 요청도 있고 하니 청소비중
자동차비 2만환이 계산되어 있으니 그것이라도 8월분 1개월분만 시험해 보
기 위하여 요금을 받지 말자는 요지의 설명이 있었음

◇ 김삼성 의원

- 오물에 대하여는 시민의 원성이 크다는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농번기도 지냈고 장마도 끝난 것 같으니 촌에서도 자연스럽게 와서 퍼
가게 될 것이니 그대로 두자

◇ 김경현 의원

- 시험보기 위하여 한달간만 요금을 받지 말자 동의
(재청)

◇ 김남진 의원

- 조례는 헌법이나 다른 없으니 법을 준수하는 의미에서나 조례가 법으
로서 존속하는 한 의회에서 의결할 수 없으니 본 건에 대하여는 의회에서
묵인할 정도로 하자
전원 찬성

※ 1953(4286)년도 목포시 일반회계 및 각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의
건

◇ 부의장

- 본 결산에 대하여 심의해 주기 바람

※ 의원측과 집행부간에 질의응답이 약 20분간 있었음

(내용 생략)

◇ 이자흥 의원

- 본 결산안은 내무위원회에서 심시한 토의도 했고 중요한 것은 예산과
결산과의 차이가 심한 과년도 미수 250만환을 극력 수입하기로 하고 결산
안을 원안대로 통과할 것을 동의
(재청)

◇ 부의장

- 표결하겠음

재석의원 12명중
전원 가결

※ 1954(4287)년도 일반회계 및 각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의 건

◇ 명남철 의원

- 본 예산안에 대하여는 내무위원회의 수정안대로 통과할 것을 동의
(재청)

◇ 부의장

- 표결하겠음
재석의원 11명중
전원 가결

※ 목포시 호별세 부가금 조례 일부 개정의 건

◇ 김용준 사무과장

- 본 건에 대하여는 지금 당장에는 지장이 없으나 법과 조례가 형식적으로 부합되어야 되며 따라서 인상키로 되었으나 금년은 해당이 안된다.

◇ 정응표 의원

- 예산 조치에 필요한 시기에 심의하도록 하고 본 조례안을 보류할 것을
동의
(재청)

◇ 부의장

- 표결하겠음
재석의원 12명중 가 4
부결

◇ 김경현 의원

- 본 건은 목포시에만 국한된 것이 아니고 정부방침인 만큼 원안대로 통

과할 것을 동의

(재청)

◇ 부의장

- 표결하겠음

재석의원 12명중 가 8

가결

※ 1953(4287)년도 교육위원회 세입세출 결산 보고의 건

◇ 정응표 의원

- 본 건을 원안대로 통과할 것을 동의

(재청)

◇ 부의장

- 표결하겠음

재석의원 11명중

가결

※ 1954(4287)년도 교육위원회 세입세출 추가개정 예산의 건

◇ 부의장

- 본 추가예산안에 대하여는 내무위원장의 보고대로 통과 안 시킨 것이 아니라 각 지방실정을 참고하기 위하여 보류한 것이니 오늘 의제로서 논의 하려며는 회의 규칙 제7조에 의하여 재석의원 3분의 1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논의할 수도 있으니 절차를 밟아서 해주기 바람

◇ 이재홍 의원

- 예산 내용을 보면 건물 수선비도 들어 있고 물가는 날마다 올라가고 있으니 언제 의회가 소집될지도 모른 일이니 오늘 의제로서 상정해서 논의 할 것을 동의

(재청)

◇ 부의장

- 표결하겠음
재석의원 12명중 가 9
가결

◇ 김남진 의원

- 추가예산의 내용을 보면 주로 과년도 수입이요.
지출 내용을 보면 공무원 대우 처선에 따른 것과 아직까지 못하고 있는 국민학교 신설비와 물가고에 따른 자연 증가이니 원안대로 통과할 것을 동의 (재청)

◇ 부의장

- 표결하겠음
재석의원 12명중 가 11
가결

◇ 정응표 의원

- 구호진료소 존속 문제인데 타지방으로 이거하게 되면 그 약품이 목포에 떨어지면 좋으나 그럴 리 만무한 일이니 목포에 존속토록 강력 추진하기 위하여 교섭위원을 의회에서 1인 시에서 1인을 구성해서 운동을 전개하자 동의
(재청)

◇ 부의장

- 표결하겠음.
재석의원 12명중 전원가결

※ 의회 대표로 정응표 의원을 추대할 것을 전원 찬성

◇ 김남진 의원

- C.A.C 구호 약품에 대한 진료권 발부건인데 구호 약품을 받는 병원은

원칙적으로 전부 무료 진료권을 끊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특히 난관에 봉착되어 있는 시립병원만 발부하고 노동병원에는 발부치 않는 이유가 어디있으며, 이러한 시행정이라면 어디까지나 책임 추궁 하겠으며, 이 문제의 한계까지도 도에 가서 물어 보자

◇ 중소 상공업자에 대한 응크라 부흥 원조비 대부에 있어 전남은 신청 건수가 120건인데 그중 광주가 8할을 점한 80건에 달하나 목포는 불과 20건 밖에 없다. 이는 수속 절차의 복잡과 시일이 급박했다는 원인도 있겠으나 목포 기업을 살리기 위하여 도에 가는 편에 상공과에 들러서 이런 실정도 말씀해 주기 바란다.

◇ 이문길 의원

- 사친회비 관계도 각 지방실정을 참고하자 했으니 그 문제까지 알보기 바란다.

◇ 부의장

- 회의록 서명에 김경현, 김자홍 의원을 지명

6. 폐회선언 : 부의장

(오후 5시 5분)

위 회의록을 확인하고 자이 서명 날인함

1954(4287)년 7월 28일

부의장 : 이소규

의원 : 김경현

” : 김자홍

작성자 서기 : 천세봉